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13
----------	-------

발의연월일 : 2018. 5. 10.

발의자 : 박재호 · 전재수 · 최인호

어기구 · 송기현 · 권칠승

박정 · 심기준 · 김두관

김해영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를 위하여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미사일 등의 제조·개발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 중에 재래식무기는 누락된 상황으로 국가안보 및 안전유지 강화를 위해 재래식무기를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포함할 필요가 있고,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판정 제도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등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 등을 약칭한 용어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전략물자등의 수출입 제한 및 교육명령 부과 대상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신고를 한 자를 추가함(안 제31조 및 제49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사일”을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24조의2”를 “이 조, 제2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 제5항 후단 및 제7항 중 “불법수출을”을 각각 “무허가수출등을”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불법수출”을 “무허가수출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한”을 각각 “수출하거나 수출신고

한”으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수출한”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판정을 한 자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등의 무역거래자는 판정대상 물품의 성능과 용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전략 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전략물자등에 대한 이동 중지명령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등”이라 한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수출되는 것(이하 “불법수출”이라 한다)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면 적법한 수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전략물자등의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

<p>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p>	<p>----- ----- ----- ----- -----. 1. -----</p>
<p>1.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u>수출한</u> 자</p>	<p>----- <u>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u>---</p>
<p>2. ~ 4. (생 략) 제59조(과태료) ① · ② (생 략)</p>	<p>2. ~ 4. (현행과 같음) 제5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신 설></u></p>	<p><u>③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자가 판정을 한 자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u></p>
<p><u>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u></p>	<p><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 -----.</u></p>